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나550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우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현

담당변호사 강태욱

변 론 종 결 2021. 1. 22.

판 결 선 고 2021. 2. 5.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4. 선고 2019가단23812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ㄱ ㄴ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B(C생), D(E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3. 7. 체결된 각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D,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0. 2. 2.부터 2010. 2. 23.까지 3차례 보증 채무의 이행으로 위 회사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뒤, 이에 따른 위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D, 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75634호로 그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4. 12. 위 법원으로부터 ‘D,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8,948,792원과 그중 994,231,118원에 대하여는 2010. 2. 2.부터, 그중 514,717,674원에 대하여는 2010. 2. 23.부터 각 2011. 2. 2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5. 7.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D, B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나. D, B의 어머니 I이 2016. 3. 7. 사망하였다.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 D(2남), B(5남) 외에 J(장녀), 피고(1남), K(3남), L(4남)이 있었고,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4. 망 I(이하 ‘망인’) 명의로 ‘2011. 2.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 후 위 상속인들은 2016. 3. 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1. 피고 명의로 ‘2016. 3.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과 B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토교통부,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D, B는 망인의 사망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을 잠정적으로 상속하였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지분을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그들 채권자들의 공동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그 이전에 성립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입자금을 지출하는 등 실제 매수하였으나 모친인 망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뿐이어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 실권리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상속인들 중 일부인 D, B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10. 2.경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처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금중과 등을 피하고자 2011. 2. 9. M공사로부터 망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333,469,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4.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피고의 처 N은 2002. 11. 8. 서울 구로구 O건물 3층 P호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인 2011. 6. 11. Q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지만, 피고는 그 후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인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계약 당시 이미 83세 고령이었고, 그 분양대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는 2011. 2. 8. M공사에 계약금 33,469,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치고 바로 이에 근저당권(채권자 R은행,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을 설정하고 망인 명의로 R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M공사에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6. 22. 처 소유 주택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에서 120,000,000원을 망인 명의 R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2011. 7. 12. 추가로 45,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피고의 누나 J에게 위 대출금보다 대출이율이 더 높은 J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15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J는 그 대가로 2011. 8.경부터 2012. 5.경까지 망인 명의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위해 망인 명의 R은행 계좌로 매월 520,000원~53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2. 6. 20. 대여금 150,000,000원을 위 계좌로 상환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2. 7.경부터 그 대출 원리금을 입금하였다.

(3) 망인 명의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2012. 3. 30. 자신의 S은행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출금한 돈과 2012. 6. 20. 위와 같이 J로부터 망인 명의 계좌로 변제받은 150,000,000원으로 일부 변제하여, 2016. 3. 7.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대출원금 잔액이 100,000,000원이었다. 피고는 이후 추가로 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하여 2019. 7. 31. 대출원금 잔액이 90,178,025원이었다.

(4) 피고는 종전 주거지(위 O건물 P호)에서 노모인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후에도 망인과 함께 거주해왔으며, 망인 사망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

(5) 망인이 사망한 후 D, B, 피고 등을 비롯한 상속인 6남매는 ‘망인 명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 명의로 분양받아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이므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되어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가 망인 명의로 M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고 그 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납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M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갖게 될 뿐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D, B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공유하게 되고, 피고의 망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으로 존속하게 된다. 이 경우 앞서 ‘나)의 (1)’에서 든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채무자인 D,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나)의 (2)’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D, B가 피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계약명의신탁관계에서 관련 부동산 소유관계에 관한 위 법리를 떠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라고 인식하고 그 실질을 회복하는 한편, 피고가 장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모인 망인과 함께 계속 거주하면서 부양하여 왔던 데에 관한

보상심리도 함께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

(나) 앞서 본 계약명의신탁관계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망인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들어간 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될 것이지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위와 같은 동기나 목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피고가 망인 명의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 채무(1억 원)를 변제해 온 점 등에 비추어, 그 협의 안에는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갖는 각 상속분 상당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포기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인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적극재산)과 망인 명의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 채무 및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소극재산) 외에는 없었으므로, 피고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인 피고 앞으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었고, 상속포기는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단지 절차상 편의나 무지 등으로 '상속포기'의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률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원고의 D, B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책임재산 감소는 우연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위와 동기,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권리관계 당사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피고가 망인 명의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 채무(1억 원)를 변제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D, B나 피고 등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공동담보(D, B의 상속분)를 부족하게 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보인다.

3) 수익자(피고)의 선의 여부(가정적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나)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보유·관리하며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망인의 사망을 계기로 피고의 명의로 환원받고자 하는 의사로 D, B 등 가족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이로써 망인의 상속인 중 일부인 D,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그 행위가 D,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문성관, 판사 이주영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양천구 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철근콘크리트구 평지붕 7층 아파트

지1층 48.77㎡

1층 368.77㎡

2층 341.91㎡

3층 432.28㎡

4층 432.28㎡

5층 432.28㎡

6층 432.28㎡

7층 432.2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양천구 대 51369.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84.51㎡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51369.4분의 108.414